

2019년도 제23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30.(수), 10:00 ~ 12: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7명
 - 심의위원 : 김경숙,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백대용,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전문위원
2. 안건상정	전문위원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안건상정	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2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의 건	
4.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주요내용

-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함

- 회의결과

- 만장일치로 박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됨

○ 제2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의 건

- 주요내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함

- 회의결과

- 개정되는 저작권법 122조의6에 따라 심의위원 수가 확대될 때까지 위원 4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3개를 아래와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함

제1분과위원회 : 백대용, 오영주, 최승수, 최현용 위원

제2분과위원회 :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최승수 위원

제3분과위원회 : 김경숙, 박재화, 박정인, 최현용 위원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성원영 전문위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3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정하고 있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정하고 있음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의미함
위원님께서서 경험이나 자질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박성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함
- B 위원 : A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C 위원 : 동의함

- D 위원 : 같은 생각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박성호 위원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

o 제2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의 건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항은 “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의 배정 및 정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되는 저작권법 제122조의6은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분과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내년에 심의위원의 수가 20명까지 확대되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일부 위원님은 2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오늘 분과위원회 구성이 정해진다고 해서 임기종료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심의위원이 증원되거나 신학기 강의 일정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이 재조정될 수 있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대면 심의가 개최되며, 수요일과 금요일은 온라인 심의가 개최됨

- B 위원 :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언제까지 해당 일정으로 유지되는

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2020년 신학기 시작 전인 1월~2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4월~6월 사이에 위원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심의위원이 증원되면 위원님들께서는 대면심의에 주 1회 참여하게 될 것임
- 박성호 위원장 :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오늘 확정해야 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당장 내일 분과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오늘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함
첫 분과위원회 개최를 다음 주로 미루게 되면 심의 요청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방치될까 우려됨
이용자, 권리자, 여성 위원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작성하였음
- 박성호 위원장 : 전문위원이 제안한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 E 위원 : 구성안대로 목요일 오전에 참석 가능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할 예정임
- B 위원 : 내년에는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나 올해는 안식년이어서 월, 화, 목 모두 가능함

- C 위원 : 제2분과위원회에 배정되었는데 화요일 오전 재판이 있는 경우가 많아 B 위원님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질의함
- B 위원 : 가능하다고 답변함
- 박성호 위원장 : 분과위원회 구성은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제2분과위원회만 C 위원님 대신 B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의 건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1분과위원회는 백대용, 오영주, 최승수, 최현용 위원, 제2분과위원회는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최승수 위원, 제3분과위원회는 '김경숙, 박재화, 박정인, 최현용 위원'으로 각 구성함”

4. 폐회 선언

- o 박성호 위원장이 제23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3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6.

위원장 박성호

위원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